

2023년 기업부설연구소 R&D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

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성장 지원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2023년 기업부설연구소 R&D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27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구 자 균

1. 사업목적

- 대학·출연(연)의 공공연구성과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요 혁신성장 산업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성장 지원
 - 미래 시장성이 높은 기술·제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혁신을 촉진

2. 지원분야

-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, 기술적 난이도와 초기 투자 위험이 높은 혁신성장 5대 산업분야* 관련 기술·제품 개발

* ①탄소중립 ②신재생에너지 ③첨단바이오 ④미래 모빌리티 ⑤디지털전환

※ 민간R&D협의를 통해 도출된 혁신성장 5대 산업분야 247건 기술(사업공고 첨부자료 [별첨] 참고) 관련 전방/후방 산업 분야의 기술·제품 개발은 선정평가 시 우대

3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- **지원대상** :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)를 보유한 중소·중견 기업 중, 「기업부설연구소 R&D 역량진단 모델」에 따라 R&D역량진단('19~'21)* 조치가 가능한 기업

* 2021년 R&D역량진단값은 '23.2월초 산출예정

[참고 1] 기업부설연구소 R&D 역량진단 모델 개요

- **(개발배경)** R&D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그 수준에 따라 수준별 역량강화 정책과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기업은 R&D 전략수립에 활용
- **(진단방법)** 기업 R&D 역량지표를 정의하고 **업종 및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**
- **(평가지표)** 4개 영역(R&D자원, 혁신활동, 혁신산출, 혁신성과)의 **21개의 평가지표**
 - ※ 가점지표 4개(+5)를 포함하여 총 105점 만점
 - ※ 평가지표: R&D 투자규모, R&D 집약도, 연구원 수, 연구기자재 수, 연구소 업력, 고급 연구인력 비중, 교육훈련비 비중, 신기술·신제품 인증 실적 등

[기업부설연구소 R&D 역량 진단방법]

기업부설연구소/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(<https://www.rnd.or.kr/>)에서 해당 연구소 그룹(R&D역량) 확인 가능

* <역량진단 - 역량진단결과>에서 기업 공동인증서 또는 인정번호로 로그인 후, [R&D역량 진단결과] 메뉴에서 확인

[참고 2] 기업연구소 R&D역량 진단모델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연구소 구분

구 분	내 용	지원가능 내역사업
잠재형 연구소	상위 60% < R&D역량진단결과(R) ≤ 80%	내역사업① (기업연구소 연구저변 확대)
성장형 연구소	상위 40% < R&D역량진단결과(R) ≤ 60%	내역사업② (기업연구소 혁신성장 촉진)
도약형 연구소	상위 20% < R&D역량진단결과(R) ≤ 40%	내역사업③ (선도형 기업연구소 육성)

※ 사업 지원대상은 「상위 20% < R ≤ 80%」에 속하는 기업부설연구소로 한정

○ 내역사업별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
구분	신청자격		지원규모(기간)
	R&D역량진단결과(R)	신청자격 상세내용	
내역① (기업연구소 저변확대)	<잠재형연구소> 상위 60% < R ≤ 80%	R&D과제 수행에 있어서 대학·출연(연)의 지원이 필요한 잠재형 연구소 ※ 기업 단독 신청	· 5개 과제 / 1년 (2억원/년)
내역② (기업연구소 혁신성장 촉진)	<성장형연구소> 상위 40% < R ≤ 60%	기업연구소/대학·출연(연)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· (주관기관) 대학·출연(연)으로부터 공공기술** 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성장형 연구소 · (위탁기관) 주관기관에게 공공기술**을 이전 하거나 또는 이전예정인 대학·출연(연) ※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	· 10개 과제 / 1.75년 (3억원 이내/년) ※ 총 1.75년 지원
내역③ (선도형 기업연구소 육성)	<도약형연구소> 상위 20% < R ≤ 40%	기업연구소/대학·출연(연)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· (주관기관) 대학·출연(연)으로부터 공공기술** 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도약형 연구소 · (위탁기관) 주관기관에게 공공기술**을 이전 하거나 또는 이전예정인 대학·출연(연) ※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	[1단계 : 사전기획] · 10개 과제 / 3개월 (0.3억원) [2단계 : 사업화R&D] · 5개 과제 / 2.5년 (4억원 이내/년)

* 3개년('19년~'21년) 역량진단 결과 중 해당되는 내역사업 1개를 선택하여 신청(복수신청 불가)

** 사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대학·출연(연)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R&D
 성과물이 이전(또는 이전예정)되었으며,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로, 반드시 미래기
 술마당 또는 기술은행(NTB)에 등록/조회가능한 기술에 한정

4. 사업 세부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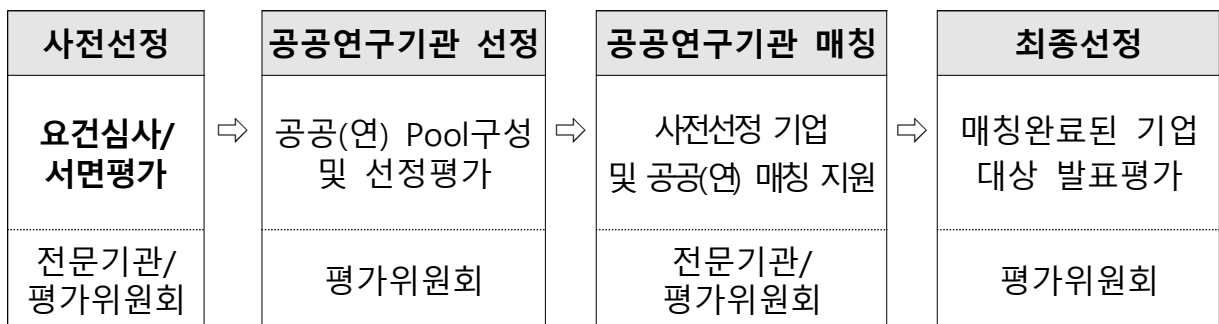
[내역1] 기업연구소 연구저변확대

○ 사업개요

- (목적) 기업에서 제안한 R&D 과제(기존 수행 과제)에 대학·출연(연)을 매칭하여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지원
- (신청대상) R&D과제 수행에 있어 대학·출연(연)의 지원이 필요한 잠재형 연구소*(상위 60% < R&D역량진단 결과 ≤ 80%)
 - * 연구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공공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사전에 요구하지 않고, 선정과정에서 적절한 공공연구기관을 전문기관에서 매칭
- (절차) ①R&D과제 제안(기업) → ②사전선정(2배수) → ③공공연구기관 참여 신청 및 매칭* → ④최종선정 → ⑤역량강화 R&D 지원(1년)
 - * 대학·출연(연)의 지원계획 및 내용을 검토하여 기업이 매칭에 참여
- (규모) 단년도 과제로, 총 5개 과제(기업당 1개 과제, 2억원/1년)

구분	정부출연 / 민간부담비율	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	비고
내용	75% / 25%	1년, 2억원	민간부담액(현물+현금) 67백만원 내외

○ 선정절차



※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

○ 평가기준

- 서면평가 항목

구 분	평가지표	배점(100)
기술지원 필요성 및 시의성	지원의 필요성	10
	지원의 시의성	10
목표의 명확성과 실현가능성	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	10
	목표의 실현가능성	20
기술지원방향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	추진체계의 합리성	10
	사업기간의 적정성	10
사업의 파급효과	사업의 파급효과	20
지원분야 적합성*	지원분야에 대한 지원과제의 적합성	10

* 서면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지원분야의 적합성 평가는 발표평가 단계에서 실시

- 공공연구기관 선정평가 항목

평가항목	세부 항목	평가지표(안)	배점(100)
기업 지원능력	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	- 기업지원 수행 관련 보유특허, 인프라 구축 현황 등 기관(연구실)의 연구환경(역량) - 기업지원에 실효성 있는 지원 여부	20
	수행인력 기술이해도	- 과제/기술 관련한 참여인력의 전문성 여부 - 과제/기술 관련한 주요 요소기술, 개발 이슈·현황 등 참여인력의 기술이해도	30
	사업추진 및 연계 전략	과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	30
기대효과		위탁연구개발 결과물이 본 제안과제에 미치는 영향력, 예상 파급효과	20

- 발표평가 항목(최종 선정평가)

구분	세부항목	배점(100)
과제 추진계획	- 개발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- 사업수행체계 적정성	30
과제 추진의지	-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- R&D과제의 추진 실현 가능성	30
공공연구기관 지원필요성	지원계획 및 범위 명확성	40

* 서면평가가 생략된 경우 [지원분야의 적합성] 평가 항목 추가(배점 20점)

[내역2]

기업연구소 혁신성장 촉진

○ 사업개요

- (목적) 대학·출연(연)의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기존 제품(기술)을 고도화하는 역량 강화
- (신청대상) 기업연구소와 대학·출연연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
 - (주관기관) 대학·출연(연)으로부터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성장형 기업연구소 (상위 40% < R&D역량진단 결과 ≤ 60%)
 - (위탁기관) 주관기관에 공공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예정인 대학 또는 출연(연)
- (절차) ①컨소시엄 구성(기업+대학·출연(연)) → ②사업화 R&D지원(1.75년)
- (규모) 총 10개 과제(기업당 1개 과제)

구분	정부출연 / 민간부담비율	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	비고
내용	75% / 25%	1.75년, 3억원 이내/연	민간부담액(현물+현금) 1억원 내외/연

○ 선정절차

서류검토		서면평가		발표평가
요건심사	⇒	제출된 과제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선정	⇒	최종 지원기업 선정
전문기관		평가위원회		평가위원회

※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

○ 평가기준

- 서면평가 항목

구 분	평가지표	배점(100)
사업추진의지	기술보유자의 사업화 추진의지	20
	사업화 주제의 혁신성	
추진계획의 구체성	사업목표와의 부합성	20
	기술과 사업화 추진계획의 부합성	
수행능력	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, 추진체계의 적절성	30
	제안 기술 및 사업화 범위와 수행계획의 실현성	
실용화 가능성	실용화 전략의 타당성	20
지원분야 적합성	지원분야와 제안된 과제 of 적합성	10

*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배 내외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

- 발표평가 항목(최종 선정평가)

구분	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신제품(기술)의 우수성(30)	기술의 혁신성	• 제안 기술의 혁신성, 차별성	15
	기술의 완성도	• 기술의 현재 수준, 완성도 - 제품/서비스 적용 가능성	15
신제품(기술)의 사업성(30)	제품화 가능성	•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	15
	사업화 추진계획	• 참여주체(대학·출연(연), 기업)의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• 연구인력/장비 등 확보 계획	15
참여주체 역량(20)	시장개발역량	• 기술사업화 가능성, 시장진입 가능성,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 • BM 개발 수준 및 시장개발 계획	10
	사업추진역량	• 참여자들의 기술개발, 사업화 추진 전문성 - 기술개발 역량, 기술사업화 역량 등	10
컨소시엄 활동계획 및 내용(20)	사업목표의 적정성	•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	5
	사업추진 적정성	• 단계별 사업내용의 적정성	5
	실현가능성	• 목표달성 및 기술사업화의 연계성	10

* 서면평가가 생략된 경우 [지원분야의 적합성] 평가 항목 추가(배점 20점)

[내역3]

선도형 기업연구소 육성

○ 사업개요

- (목적) 대학·출연(연)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신제품(기술)을 기획·개발하는 역량 강화
- (신청대상) 기업연구소와 대학·출연연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
 - (주관기관) 대학·출연(연)으로부터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도약형 기업연구소 (상위 20% < R&D역량진단 결과 ≤ 40%)
 - (위탁기관) 주관기관에 공공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예정인 대학 또는 출연(연)
- (절차) ①컨소시엄 구성(기업+대학·출연(연)) → ②사전기획 지원(3개월, 2배수) → ③후속 지원과제 선정* → ④사업화 R&D지원(2.5년)
 - * 신제품(기술)의 우수성, 사업성, 기존 제품(기술)과의 차별성 등을 바탕으로 선정
- (규모) ^(1단계)사전기획 10개(기업당 1개), ^(2단계)사업화R&D 5개(기업당 1개)

구분	정부출연 / 민간부담비율	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	비고
(1단계) 사전기획	100% / 0%	3개월, 30백만원	민간부담액 없음
(2단계) 사업화R&D	75% / 25%	2.5년, 4억원 이내/연	민간부담액(현물+현금) 1.3억원 내외/연

○ 선정절차

[1단계 : 사전기획 선정]

서류검토		서면평가		발표평가
요건심사	⇒	평가결과 70점이상 과제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	⇒	최종 지원기업 선정
전문기관		평가위원회		평가위원회

[2단계 : 사업화 R&D 선정]

서류검토		발표평가		최종 선정
사전기획단계 최종 보고서 검토	⇒	사전기획결과를 대상으로 성과평과 실시	⇒	발표평가를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지원 과제 선정
전문기관		평가위원회		평가위원회

○ 평가기준

[1단계 : 사전기획 선정]

- 내역사업 ②의 선정기준과 동일

[2단계 : 사업화 R&D 선정]

- 서류검토 : [1단계: 사전기획]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검토
- 발표평가 : 1단계 수행과제 중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(경쟁률 2:1) 선정

구 분	평가지표	평가요소
컨소시엄 역량 (15점)	연구책임자 역량	연구책임자 역량
	개발역량의 적정성	- 사업화R&D 단계에서 추진주체별 의지 - 추진주체의 적절성 및 역량 - 참여기관간의 역할분담의 적정성
	인프라 보유현황	참여주체별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
기술개발 계획 (30점)	신제품개발의 타당성	- 기술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측정가능성 - 추가기술 도출, 기술현황, 핵심기술 분석, 핵심기술 개발 가능성, 외부 기술 확보 가능성(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등)
	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	- 기술개발 로드맵의 구체성 - 기술개발의 구체성 및 타당성 - 기술개발사업화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
상용화 계획 (30점)	상용화 가능성	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(시장 존재여부, 해외시장 분석여부 등)
	상용화 전략의 타당성	개발기술의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전략 (수출확대 전략 포함)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
	상용화 의지	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의 구체성 (기업자체 추가투자, 외부 조달 계획 등)
파급효과 (15점)	협력지속 창출가능성	사업 완료 후 구성원간(컨소시엄 내) 지속가능한 공동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
	기업/산업발전 기여효과	- 관련 기업의 매출/수출/ 고용 창출 가능성 - 관련 산업 선도 가능성
운영계획 (10점)	사업비 배분의 적정성	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,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- 공고기간 : 2023년 1월 27일(금) ~ 2월 27일(월) 18:00까지
- 신청기간 : 2023년 1월 27일(금) ~ 2월 27일(월) 18:00까지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- 신청방법
 - 홈페이지(www.koita.or.kr)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(등기) 또는 방문 제출
 - ※ 제출확인을 위해 「연구개발과제계획서」 사본(한글(초본), PDF(직인본) 각 1부) 메일 (koita235@naver.com)로 송부
 - 접수처 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층 기술혁신지원팀 권경엽 대리
((우)06744, 서울 서초구 바우피로37길 37 산기협회관(양재동 20-17))
 - ※ 봉투 겉면에 「'23년 기업부설연구소 R&D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서 재증」 반드시 기재

○ 제출서류

순서	구분	제출서류명	제출부수	제출기관	비 고
1	공통	신청공문 (주관기관장 명의)	1부	주관기관	기관 자율양식
2		사업자등록증	1부	주관기관	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
3		수행기관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(직전년도로부터 최근 2년 결산자료)	1부	주관기관	- 표지(회계사 직인 포함), 재무상태표 (표준대차대조표), 손익계산서(표준 손익계산서) *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 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
4		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	1부	주관기관	국가R&D사업관리서비스의 (https://www.ntis.go.kr) 유사도 검색서비스 를 이용하여 검색한 결과 출력물제출
5		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	1부	주관기관	[붙임 1] 파일 작성
6	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1부	주관기관	[붙임 2] 파일 작성
7	기업연구소 저변확대	연구개발과제계획서	1부	주관기관	[붙임 3] 파일 작성
		기술개요서(RFP)	1부		[붙임 4] 파일 작성
8	기업연구소 혁신성장 촉진	연구개발과제계획서	1부	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	[붙임 5] 파일 작성
9		기술이전계약서*	1부		주관기관-위탁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계약서
10	선도형 기업연구소 육성	연구개발과제계획서	1부	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	[붙임 6] 파일 작성
11		기술이전계약서*	1부		주관기관-위탁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계약서

* 기술이전 예정인 경우, 이전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(이전 계약서 등)으로 대체하여 제출

6. 기술료 징수

- (근거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(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)에 따라 기술료 납부
- (징수 대상) 종료과제 평가 결과 '성공'(우수, 보통) 등급의 과제를 수행한 참여기업
- (징수 내용) 경상기술료 징수(납부상한액 중소기업 10%, 중견기업 20%)
※ 연구개발 종료 이후 증빙서류 검토하여 기관별 경상기술료 납부액 결정

7. 지원제외 사항

-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
검토항목	기준
신청자격 및 공고적합성	• 주관기관 등이 신청제외 및 평가·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기 개발/ 기 지원	• 신청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개발/기 지원 대상인지 여부 - 해당기업의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 해당 여부
의무사항 불이행	• 주관·위탁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참여제한 여부	• 주관·위탁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대상인지 여부
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	• 주관·위탁기관, 대표자 등이 부도, 휴·폐업, 채무불이행, 부채비율 1,000%이상,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지 여부

※ 이 외 [붙임 2.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] 상 검토내용에 해당되는 경우

8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」, 「과학기술기본법」 등을 적용

9. 문의처

-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(연락처: 02-3460-9167, 9168)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(연락처: 044-202-4737)
※ 신청·접수여부, 서류 작성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10. 사업설명회 안내

○ 오프라인 사업설명회

구 분	내 용
일 시	'23. 2. 9(목) / 14:00~16:00 ※ 신청기한 : '23. 1. 27(금) ~ 2. 6(월) 18:00까지
장 소	산기협회관 B2층 대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바우뒀로 37길 37, 산기협회관(양재역 8번출구 도보 5분)

*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.(주차장 협소)

* 참가신청 필수(선착순 마감)

※ [참가신청 방법] ①산기협 홈페이지(www.koita.or.kr) 접속 및 '회원사지원' 메뉴 클릭 → ② '교육' 메뉴의 '교육신청(접수중 교육)' 클릭 → ③사업설명회(오프라인) 내용 확인 후 "신청하기" 버튼 클릭

*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은 사업공고 게재일부터 가능하며, 강의장 규모로 인해 신청이 조기마감 될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.